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222호
2. 발 의 자 : 김미경 의원
3. 발의일자 : 2017. 11. 6.
4. 회부일자 : 2017. 11. 7.

II . 제안이유

- 학생선수가 운동경기에서 성적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약물 등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약물 등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III . 주요내용

- 교육감은 약물로부터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IV.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 및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2.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도 붙임)
3.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7년 11월 6일 김미경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222호로 발의되어 2017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재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생선수를 약물로부터 보호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의견

- 우리나라의 학교체육은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경기 결과에 따른 실적만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학생선수들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¹⁾.
- 그러나 도핑의 중독성 등을 감안할 때 성장기의 학생선수가 도핑²⁾에 의존하게 되면 이는 결국 건전한 운동선수로 성장하는데 장애가 될 뿐만 아니라 성인선수가 돼서도 약물에 의존하는 행태가 지속되어 결국 선수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1) 유소년 체육선수 금지약물 적발 건수(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실 공개자료 참고,2017.1.27)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유소년 체육선수	2명	3명	11명	10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그러나 도핑의 엄격한 금지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교육에 있어서도 대회 출전시 단순한 현장 안내 정도의 형식적 수준에 그치고 있어 도핑 방지 교육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17년 4월 18일 국회에서는 도핑 방지 교육의 의무화를 위해 「학교체육 진흥법」이 개정되었고³⁾, 이와 동시에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연 1회 이상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하도록⁴⁾ 의무화되었습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동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교육청차원에서 동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에게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상위법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2017학년도부터 학교 교육계획 수립시 학생선수 및 운동부지도자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연 2회 6시간 이상 실

3) 「학교체육 진흥법」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이하 "도핑방지교육"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한다.

② 도핑방지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핑방지교육은 도핑의 개념, 금지 약물 관련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도핑방지교육은 견학·체험 활동 또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하도록 지도하고 있고, 인권교육내용 중 도핑방지교육 1시간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⁵⁾,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전임코치 역량강화 연수’ 등을 통해 도핑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금지약물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약물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여 학생선수를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스포츠 정신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교육부는 ‘2017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에 따라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교육청 주관으로 도핑방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동 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도 별도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체육건강과-19082).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 권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2017 학교 운동부 운영 매뉴얼 20쪽

2. 학생선수, 운동부 지도자 인권교육 강화【연2회 6시간이상】

나. 학생선수, 운동부지도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1)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집합, 사이버, 개별 연수 등) 이수하도록 지도 강화

2) 학교 교육계획 수립 시 인권교육 내용 반영

- 학생선수 인권교육 실시[연 2회(6시간 이상), 단위학교]

■ 주 내용 : 인권존중, 성교육, 생명존중, 스포츠맨십, (성)폭력 예방, 도핑방지교육 등

관계 법령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2017.10.19.] [법률 제14763호, 2017.4.18., 일부개정]

제12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핑(「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도핑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생선수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도핑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7.10.19.] [대통령령 제28354호, 2017.10.17., 일부개정]

제3조의2(도핑 방지 교육)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도핑 방지 교육(이하 "도핑방지교육"이라 한다)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한다.

② 도핑방지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도핑방지교육은 도핑의 개념, 금지 약물 관련 정보 및 도핑 관련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도핑방지교육은 견학·체험 활동 또는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